

# 「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검토보고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5년 4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 I. 제안이유

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 II.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평창군의 긴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나. 고향사랑기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적립된 기부금으로 2025년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대화 유치 및 개최를 통한 평창군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라. 식품진흥기금

2024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마.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 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8건)	29,685,324	29,534,067	151,257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74,816	11,978,467	△103,651
평 창 군 자 활 기 금	530,813	530,813	-
평 창 군 고 향 사 랑 기 금	1,191,654	964,809	226,845
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	2,785,943	2,757,880	28,063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48,244	248,244	-
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1,711,506	1,711,506	-
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	147,507	147,507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1,194,841	11,194,841	-

### III. 기금변경 개요

#### □ 변경기금 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 ·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기정대비 7,774백만원이 감소한 17,701백만원임.

[단위:천 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 성 액①	2025년 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당초대비 증 감
		수입 ②	지출 ③		
합 계(8건)	25,475,167	4,210,157	11,984,264	17,701,060	△7,774,1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609,877	264,939	8,000,000	3,874,816	△7,735,061
통 합 계 정	78,829	2,502	0	81,331	2,502
재 정 안 정 화 계 정	11,531,048	262,437	8,000,000	3,793,485	△7,737,563
평 창 군 자 활 기 금	515,008	15,805	28,000	502,813	△12,195
평창군고향사랑기금	889,654	302,000	55,000	1,136,654	247,00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233,943	552,000	979,000	1,806,943	△427,000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18,824	29,420	0	248,244	29,420
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1,182,228	529,278	650,000	1,061,506	△120,722
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	113,899	33,608	33,296	114,211	312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711,734	2,483,107	2,238,968	8,955,873	244,139

※ 자료근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IV. 검토결과

### 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총괄)

-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51백만원 증액된 총 29,685백만원이며
  - 수입은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에서 예치금회수로 227백만원,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회수로 2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에서 각각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과 기타지출로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에서 비융자성사업 55백만원과 예치금 1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금운용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획액	구성비	기 정 계획액		증감	증감률
			계획액	구성비		
총 계	29,685,324	100.00%	29,534,067	100.00%	151,257	0.51%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74,816	40.00%	11,978,467	40.56%	△103,651	△0.87%
평 창 군 자 활 기 금	530,813	1.79%	530,813	1.80%	0	0
평 창 군 고 향 사 랑 기 금	1,191,654	4.01%	964,809	3.27%	226,845	23.51%
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	2,785,943	9.38%	2,757,880	9.34%	28,063	1.02%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48,244	0.84%	248,244	0.84%	0	0
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1,711,506	5.77%	1,711,506	5.80%	0	0
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	147,507	0.50%	147,507	0.50%	0	0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1,194,841	37.71%	11,194,841	37.90%	0	0

## 나. 기금별 변경내역

###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기획예산과)

- 수입·지출계획은 11,79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4백만원 감소.
  - ▶ 수입은 예치금 중도해지(7월만기/5월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104백만원 감소
  - ▶ 지출은 예치금 8,104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에 8,0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1,793,485	11,897,136	△103,651	합 계	11,793,485	11,897,136	△103,651
예 치 금 회 수	11,531,048	11,531,048	0	예 치 금	3,793,485	11,897,136	△8,103,651
이자수입	262,437	366,088	△103,651	기타지출	8,000,000	0	8,000,000

### □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세정과)

- 수입·지출계획은 1,19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27백만원 증가.
  - ▶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227백만원 증가
  -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에 5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에 17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고향사랑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191,654	964,809	226,845	합 계	1,191,654	964,809	226,845
예 치 금 회 수	889,654	662,809	226,845	비융자성 사업비	55,000	0	55,000
이자수입	2,000	2,000	0	예 치 금	1,136,654	964,809	171,845
기타수입	300,000	300,000	0				0

###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올림픽체육과)

○ 수입·지출계획은 2,78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8백만원 증가.

▶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28백만원 증가

▶ 지출은 예치금 99백만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2025년 HAPPY700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등에 12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785,943	2,757,880	28,063	합 계	2,785,943	2,757,880	28,063
전 입 금	500,000	500,000	0	비 융자 성 사 업 비	979,000	852,000	127,000
예 치 금 회	2,233,943	2,205,880	28,063	예 치 금	1,806,943	1,905,880	△98,937
이자수입	52,000	52,000	0				

####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보건정책과)

○ 수입·지출계획은 14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 지출은 예치금 2백만원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4년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지원 사업)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47,507	147,507	0	합 계	147,507	147,507	0
보 조 금	20,100	20,100	0	비 융자 성 사 업 비	31,746	31,746	0
예 치 금 회	113,899	113,899	0	예 치 금	114,211	115,761	△1,550
이자수입	3,508	3,508	0	기타지출	1,550	0	1,550
기타수입	10,000	10,000	0				

## 다.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sup>1)</sup>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sup>2)</sup>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 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 없이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추후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55백만원 및 예치금 172백만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반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모두 20% 이하 범위 내의 변경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모든 기금 변경안을 일괄 제출하는 관행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행정 절차에 대한 과도한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 · 부문 ·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으로 구분한다.

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의무가 없으나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고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원안 의결한 사례<sup>3)</sup>가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방기금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형식적·실질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23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sup>4)</sup>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편성은 사업부서 확인 결과 단순히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가 아닌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민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지역 청소년의 문화 활동 지원 및 성장

3)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제91회 임시회(2024.08.26.~ 09.10.)에서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원안의결 되었음.

4)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담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이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역주민 반응,  
청소년 참여도 등 성과관리 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준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